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추가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34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20년간 택시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대상 범죄에 같은 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죄를 추가하고, 임차한 자동차를 임대차계약서의 운전자 외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은 이용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반해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 시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할관청이 위반횟수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또는 사업면허취소 처분 등 순차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20년간 택시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대상 범죄에 같은 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따른 죄를 추가함(안 제16조제2항제2호)
-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법에서 위임한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7조의2, 별표 1의2 신설)
-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 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안 제38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신설)
- 라. 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등(안 별표3, 별표5, 별표6)
-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는 경우 또는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에 한 번을 위반하더라도 관할관청이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또는 사업면허취소 처분 등 순차적으로 처분 할 수 있도록 완화함
 - 2)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별 운송가맹점 가입 허용에 따라 사업일부 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함
 - 3)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함

- 4) 렌터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의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를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별표 1의2에 규정된 법령을 말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제38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6가의 위반내용란 중 “휴업”을 “휴업(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16다의 위반내용란 중 “경우”를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 16에 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사업면허취소
---	--	---------------	---------------	--------

별표 3 제2호가목에 3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6의 위반내용란 중 “둘”을 “동일한 차량으로 둘”로 한다.

33의2.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6호의2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	-----------------	-----------------	-----------------	-----------------

별표 5 제1호에 9의2 및 24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6호	1차 2차				180 360					
24의2.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 제85조제1항제26호의2	1차 2차 3차 이상								360 720 1,080	

[illegible]

분은 별표 3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는 포함한다.

별표 5 제1호27의 위반내용란 중 “둘”을 “동일한 차량으로 둘”로 하고, 같은 호 27의 과징금란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란 중 개인택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60 |

별표 6 제2호처목부터 오목까지를 각각 커목부터 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비고 중 “도목 및 로목”을 “로목 및 모목”으로 한다.

처. 법 제34조의5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를 운전하게 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 제6호의3	300	400	500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가목16 및 36, 별표 5 제1호 9의2 및 27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관계 법령

(제27조의2 관련)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보호법」
3. 「공인회계사법」
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6. 「공중 등 협박목적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0.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5. 「금융지주회사법」
1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7. 「기술보증기금법」

1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19.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2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22. 「농업협동조합법」
23. 「담보부사채신탁법」
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7.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9. 「보험업법」
30. 「부동산투자회사법」
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2. 「산림조합법」
33. 「산업발전법」
34. 「상호저축은행법」
35. 「새마을금고법」
3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37. 「선박투자회사법」
3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39. 「수산업협동조합법」
40. 「신용보증기금법」
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2. 「신용협동조합법」
43. 「여신전문금융업법」
44. 「예금자보호법」
4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6. 「외국인투자 촉진법」
47. 「외국환거래법」
4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49. 「은행법」
50.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5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5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5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56. 「전자금융거래법」
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59. 「주택법」
60. 「중소기업은행법」
6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6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6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6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66. 「한국산업은행법」
67. 「한국수출입은행법」
68. 「한국은행법」
6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7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71. 「한국투자공사법」
7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7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74. 「형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
 - 가. 「형법」 제207조 내지 제208조를 위반한 경우
 - 나. 「형법」 제212조(같은 법 제207조 내지 제208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하는 다)를 위반한 경우
 - 다. 「형법」 제213조를 위반한 경우
 - 라.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를 위반한 경우
 - 마. 「형법」 제223조(같은 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하는 다)를 위반한 경우
 - 바. 「형법」 제224조(같은 법 제214조 내지 제215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하는 다)를 위반한 경우
 - 사. 「형법」 제347조 내지 제348조 및 제348조의2를 위반한 경우
 - 아. 「형법」 제352조(같은 법 제347조 내지 제348조 및 제348조의2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 자. 「형법」 제355조 내지 제357조를 위반한 경우
 - 차. 「형법」 제359조를 위반한 경우
7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규정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내지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경우

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76. 제1호 내지 제75호에 해당하는 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제한) ① (생략)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 및 제1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5조제4항 ----- ----- ----- ----- --.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생략) ② 법 제2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생략)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3. (생략) <신설>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 ----- 3.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3조의2제1항제3

	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별 표 1의2에 규정된 법령을 말한 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 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 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 ----- ----- ----- ----- -----.
1.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 내버스운송사업(별표 1의2에 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 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선만 해당한다) 및 운행형태가 광 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 머. (생 략)	1. ----- ------(별표 1의3----- ----- ----- ----- ----- ----- ----- ----- ----- ----- 가. ~ 머.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권한의 위탁) ①·② (생	제38조(권한의 위탁)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한다. 1. ~ 9. (생 략) <신 설>	③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운 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 회 요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는 법 제76조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2. (생 략) <신 설>	⑤ ----- ----- -----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운전 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	
연 락 처	(044) 201 - 4757, 4761